

「농어업·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」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안

농림부 농업정책과

1. 설치배경과 의미

□UR에 이어 WTO 도하 개발 아젠다의 출범 등 새로운 농정여건의 변화를 맞이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농어업·농어촌이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「농어업·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」를 설치하였다.

□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서의 “농특위” 설치는 정부, 농업인단체, 소비자단체, 학계 등 우리 농업에 관심과 이해가 깊은 인사를 중심으로 농어업·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농어촌건설을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.

□대통령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지만,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은 법정기구로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농어업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.

□특히,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(총11조항)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·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지난 '94년 UR협상시 「선협상·후국내대책마련」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거울 삼아 국내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협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

여·야 국회의원 및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.

2. 조직 구성과 기능

□“농특위”는 농협중앙회장, 수협중앙회장 등 농업인단체의 대표 9인이내, 소비자 단체 대표 5인이내, 학계 등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와 재정경제부, 농림부, 해양수산부, 기획예산처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통상교섭본부장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□내년 2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새로운 농어업협상에 관한 사항,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며 WTO 농어업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.

□정부는 농특위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·운영규정마련 등 구성·운영 준비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.

□앞으로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·시민단체,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분과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 등을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의 검토·조정 및 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우선 2003년도에 추진할 대책부터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3. 「농어촌발전위원회」와의 차이점

※ 농어촌발전위원회: 1994년 2월 1일 시행

구 분	농어촌발전위원회	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
발족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어촌발전위원회규정(대통령령 제14151호('94. 1. 28)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존속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포한 날부터 '94년 7월 31일까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포한 날부터 '04년 12월 31일까지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UR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대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뉴라운드협상에 대비하고,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 계획에 관한 대통령 자문
기 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경쟁력강화대책, 농촌사회간접자본확충과 다양한 산업진흥대책, 농촌후생복지대책 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뉴라운드 농어업협상, 농어업·농어촌중장기정책방향, 경쟁력강화와 소득안정, 농촌복지증진사항 협의
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회: 위원장 포함 30인 -농업계11, 교수 등 학계 14, 언론계 2, 경제계 2, 소비자 1 • 3개 소위원회(농업경쟁력강화, 농어촌산업진흥, 농어민후생복지) • 사무국(농경연)설치 -연구원 4명의 임시직 2명 • 전문위원: 10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회: 위원장 포함 30인 -당연직: 재경부·농림부·해수부·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통상교섭본부장 -농어업인단체대표 9인이내 -소비자·시민단체대표 9인이내 -전문가 및 언론인 9인이내 • 위원회: 15인 - 위원장: 농림부차관 - 위원: 관계부처1급·농어업단체·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• 분과위원회 • 사무국 • 전문연구위원

4.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·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1.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
 2.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 3.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
 4.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·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5.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
 6.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
 7. 제1호 내지 제6호의 실천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

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·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·농림부·해양수산업부·기획예산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

1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,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9인 이내
2.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5인 이내
3.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그 임기를 재직기간으로하고,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결위 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.



제6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 또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(당연직 위원은 제외된다), 농어업인, 농업·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상임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·조정,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, 기타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.

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. 다만,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상임위원장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.

④ 상임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1급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⑤ 제4조, 제5조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·제5

항은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) ①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운영 지원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

제10조(지역위원회)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·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.

제11조(위원회 운영규정) 위원회·상임위원회·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유효기간) 이 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㉞